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7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경숙, 이병운, 이상욱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%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도록(2020.6.) 권고하고 있음.
- 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(풋살구장, 다목적구장, 인라인하키장, 보조경기장, 축구장, 보조체육관, 다목적실, 간이야구장)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%~90%에서 일자별로 전액 반환, 10%, 30%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(풋살구장 등, 규칙으로 정함)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정함. (안 제11조제2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

가. 신청 당일 : 전액 반환

나. 10일전 : 전액 반환

다. 5일전 : 10분의 9

라. 1일전 : 10분의 7

제11조제2항제2호(중전의 제1호)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삭제</p> <p>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(사용연기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<u>별표 3의 사용료. 다만,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사용료의 반환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신청 당일 : 전액 반환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10일전 : 전액 반환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5일전 : 10분의 9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1일전 : 10분의 7</u></p> <p>2. ----- <u>사용료 시설. 다만,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